참고자료 1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6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5.4)

○ 지원자격 :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2015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노인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	"
6인	2,892,435.0	88,430	88,962	89,521	"
7인	3,283,019.5	99,769	105,472	100,852	"
8인	3,673,604.0	112,221	122,708	113,621	"
9인	4,064,188.5	124,384	137,773	126,158	"
10인	4,454,773.0	135,442	149,772	137,248	"

※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15.7.1.(시행일)이후 시행되는 사회통합전형에 활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50% 이하) 가구】 (2015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26,000	28,462	6,730	29,37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2인	1,577,000	48,368	26,859	48,560	"
3인	2,040,000	62,201	48,941	62,970	"
4인	2,502,000	75,980	72,579	76,843	"
5인	2,965,000	90,671	91,873	91,062	"
6인	3,428,000	104,450	112,143	105,783	"
7인	3,891,000	118,139	130,183	119,751	"
8인	4,354,000	133,489	147,619	135,442	"
9인	4,817,000	147,705	162,840	149,834	"
10인	5,280,000	161,683	177,862	164,396	"

※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는 기준 중위소득 약 59.2%에 해당(2015년 기준)

참고자료 1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 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